영 광 군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군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022-65 2022. 8. 25.(목)

고 시

영광군 고시 제2022-67호 영광군관리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공 고

영광군 공고 제2022-887호「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영광군관리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2-120(2022.3.3.)호로 결정 고시된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2. 8. 25.

영 광 군 수

1. 영광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조서 : 다음
2. 영광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노인가정과(☎061-350-58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노인가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보건위생시설

1) 장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영광 공설추모공원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산123-1번지 일원	92,007	증) 586	92,593	2022. 3. 3. (전남고 제2022-120호)	

2) 장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영광 공설추모공원	•장사시설 변경 - 면적 : 기정) 92,007㎡ 변경) 92,593㎡ 증) 586㎡	•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반영

영광군 공고 제2022-887호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영 광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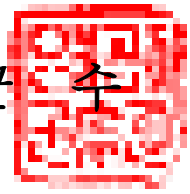

1. 조 례 명 :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2. 개정사유

○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 요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심의의 불공정 우려 예방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안 제2조 ~ 제4조)

○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안 제5조)

○ 위원의 해촉(안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운영, 의견청취 등(안 제7조 ~ 제9조)

○ 심의결정 효력 및 조치, 수당 등(안 제10조 ~ 제13조)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8. 25. ~ 9. 13.(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종합민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전화)061-350-5241 / FAX)061-350-559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종합민원실 담당자(전화 : 061-350-524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규칙안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2. 의 견	관련 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규칙 제2022- 호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영 제38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부서의 장, 민원처리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처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제11조(심의결과 조치 등) 심의 · 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심의를 요구한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주무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심의년월일	.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제　안　자	
제안년월일	.　.　.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 민원개요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민원요지				

□ 관련 법규 검토사항 및 의견

관련 법규	관 련 부 서 검 토		특기사항
	담당부서	검 토 의 견	

□ 주관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3호 서식]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

결재	서 기	간 사	위원장

회 의 일 시			장 소		
위 원 참 석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 위원)	
민 원 명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민원인 성명			주 소		
민 원 요 지					
회 의 내 용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 호	심의년월일	
안 건 명			

□ 심의위원 의견

구 분	직 위	성 명	의 견		서 명
			가	부	

[별지 제5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심 의 안 건			
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심 의 위 원 수	정원		참석		불참	
가 결 위 원 수			부 결 위 원 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년 월 일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참고 자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89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영광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제정 1993. 5.27 규칙 제750호
개정 1993. 7.14 규칙 제758호
개정 1996. 3. 8 규칙 제817호(영광군직제규칙)
개정 1997. 6. 5 규칙 제855호
개정 1998.10.17 규칙 제893호(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09.05 규칙 제 947호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1.10 규칙 제1084호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1.30 규칙 제120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일부개정) 2020.05.15 규칙 제1317호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0.09.04 규칙 제132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향상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7.1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종합민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3.8, 2000.9.5, 2008.1.10, 2015. 1.30)

1. 해당 민원관련실과소의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접수민원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 농지개량조합,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 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1997.6.5)

제3조 (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9.4.>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 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 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

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3.8, 2008.1.10, 2015. 1.30)

④ 주관 실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 제5호의 민원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재심의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개정 1993.7.14)

제6조 (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주관실과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와 소관업무담당주사 된다.(개정 1998.10.17)

제8조 (참고인 진술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6.5, 2020.5.15.>

제10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영광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영광군 규칙 제73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3. 7.14 규칙 제0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3. 8 규칙 제081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7. 6. 5 규칙 제0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7 규칙 제089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2000. 9. 5 규칙 제9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폐지) 생 략

부 칙(2008.1.10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30, 규칙 제120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영광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중 " 종합민원과장"을 각각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규칙 제1317호, 2020.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29호, 2020.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